

# 제 안 요 청 서

과업명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2024. .

담당	도로시설안전과 정준호 시설사무관	☎ 044-201-3932	Fax:044-201-5592
	도로시설안전과 김재영 전문위원	☎ 044-201-4136	

# 목 차

I . 일반용역 개요 .....	1
II .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1
III . 용역의 내용 .....	2
IV . 용역수행 일정표 .....	4
V . 용역 수행지침 .....	5
VI .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9
VII . 제안서 제출 및 작성 .....	10
VIII . 연구용역 수행업체선정 방법 .....	12
IX . 유의사항 .....	17
X . 보안대책 .....	18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 #7)

## I. 일반용역 개요

1. 용역명 :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5일)  
- 1차년도 3개월(90일), 2차년도 10개월(305일)
3. 용역예산 : 8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3천만원, 2차년도 5천만원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II.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1.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안부는 재난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 중앙행정기관을 전면 재정비
- 재난 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과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3 개정('24.7.17 시행)

- 우리부는 기존 '도로터널 사고'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규정

\*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의 작성·운영

☞ 도로국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우선 작성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청, 도공, 지자체 등)의 행동매뉴얼 작성·승인 필요

\* 매뉴얼 작성·운영 : 표준매뉴얼(~'25.1.17), 실무매뉴얼(~'25.4.17), 행동매뉴얼(~'25.7.17)

### III. 용역의 내용

#### ①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을 평가하고 도로분야의 위기 형태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도로분야의 역할 정립

- 국내·외 도로 재난사례 조사 및 분석
- 재난유형별 위기징후 목록 작성 및 감시·조치 체계 분석
-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재난유형을 선정하고 도로분야의 위기형태를 정의

\*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검토필요

- 또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의 틀을 마련하여 도로분야 역할 정립

\* (사회재난) 대형 교통사고, 시설물 화재·붕괴, 산불, 주요시설 테러 등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한파, 낙뢰, 산사태 등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등

#### ② 재난유형별 위기경보 수준 발령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수립

- 재난유형별 위기형태에 따른 상황보고 기준 방안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수준, 교통통제 범위·기간,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재난상황별 보고단계 분류기준 마련
- 위기경보 수준(관심~심각단계) 발령 기준 및 단계별 관리절차 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 수립
  - 위기경보 수준별 비상근무반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기 선정

### ③ 재난유형별 대응 실무매뉴얼

- 재난유형별 대응 기준과 실무매뉴얼 개발
-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표준서식 개발
  - 공문양식, 보도자료, 대책회의자료, 상황보고·전파 메시지(VMS 문안, SMS 메시지) 등
- 재난유형별 대응 주요 담당자별(장·차관님, 도로국장 등) 역할 및 표준 행동철차의 기준인 실무매뉴얼 작성

### ④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

-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별 도로분야의 대응 시나리오 작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법정재난을 모두 포함)
- 상황시나리오별 재난대응 조치방향과 중점사항 마련을 통한 행동 매뉴얼 작성방향 제안

### 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시군 등 각 도로관리청별 보고체계 조사 및 분석
- 지자체 도로에서 재난 발생시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 등 역할 마련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자료 등 마련

#### IV. 용역수행 일정표

세부사업	비중	추진 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재난유형을 평가하고 도로분야의 위기형태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도로분야의 역할 정립	10	3	3	2	2									
재난유형별 위기경보 수준 발령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수립	20			4	4	4	4	4						
재난유형별 대응 실무매뉴얼 제작	20				5	5	5	5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	20				4	4	4	4	4					
도로관리기관 행동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	20						4	4	4	4	4			
사후검증 (지자체 교육 자료 등)	10											4	3	3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													
공정률	단일	3	3	6	15	13	17	17	8	4	4	4	3	3
	누적	3	6	12	27	40	57	74	82	86	90	94	97	100

## V. 용역 수행지침

### 1.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3개월(395일)로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과업수행 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 사.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아.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자.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차.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반영 검토하여야 한다.
- 카.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공동소요가 기본원칙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에 근거하여 협의를 거친 이후에 발주처 단독소유가 가능하다.

## 2. 세부사항

- 가.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나.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라.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3. 설계변경 조건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나.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4. 보고 및 보고서 제출 등 성과관리

- 가.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착수보고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다. 중간보고 : 과업착수 후 중간성과를 정리하여 보고 하여야 함
- 마. 최종보고 : 최종매뉴얼(안)은 과업종료 前에 보고하고, 최종 매뉴얼은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바.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사. 과업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일	부수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3부
중간매뉴얼	발주처 협의	3부
최종매뉴얼	준공 前	30부

※ 중간보고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매뉴얼이 아닌 서면양식으로 대체 가능

## 5. 기타사항

- 가.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국토교통부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나. 해당 용역의 성과품은 발주청 요구 시 준공 前이라도 지방청 또는 국토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V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1.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 계약방법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VII. 제안서 제출 및 작성

### 1. 제안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다.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044-201-4136)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일반사항

- 과업제안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제안 개요(배경, 목적,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
  - 과업수행계획(과업 세부내용, 수행방법, 세부추진계획 등)
  - 추진일정 등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PDF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VIII.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 1. 선정방식 및 절차

####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나. 선정절차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필요시, 서면평가)

#####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

####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평가기준

###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재무구조 ·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계량평가
	연구인력	- 연구인력(석, 박사 등) 보유현황	10	"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 평 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20	"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 · 방법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적정성	15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제안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과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5	"
	연구조직 구 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
	기 타	- 현실 반영성	10	"
계			100	



## 가.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1)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4
A0	A20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1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8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2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9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6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3
B+, B0, B- 이하	B-이하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체별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Rightarrow$  평점 =  $\sum(\text{업체별 평점} \times \text{지분율})$

### (2) 연구인력 보유현황(10점)

구 분	7인 이상	5~6인	3~4인	3인 미만
점 수	10	9	8	7

※ 석사·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

## 나.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 부 분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20	20	16	12	8	4
	수행계획	15	15	12	9	6	3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5	15	12	9	6	3
	연구조직 구성	10	10	8	6	4	2
	기 타	10	10	8	6	4	2

##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2)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평가 후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가격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함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IX. 유의사항

### 가.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 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 나.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다.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 X. 보안대책

- 본 과업 수행자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는 과업수행을 위한 곳으로 한정하며,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 자료, 성과품 등은 보관함을 구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의자료 등을 위해 배포한 자료는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생산되는 자료는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관련으로 인쇄를 할 경우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알려주고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납품 물량 추가 발행 시 감독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취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과품을 과업 완료시에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 하도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안대책	비고
용역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책임자(정·부) 지정</li> <li>○ 계약상대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li> </ul>	
용역수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체 수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참여 인원의 최소화 (정규직만 참여)</li> <li>-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li> <li>- 참여인원 교체시 인수인계 철저 및 감독관 확인을 받고 서약서 징구</li> <li>- 주요자료는 별도의 보관함을 비치하고 정부책임자 지정 관리</li> <li>- 보안관련 대장 비치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일지</li> <li>· 참여자 이외 자료열람 금지</li> <li>· 각종 회의자료 등은 사전 필요부수만 발간 (회의종류 후 회수파기, 기록유지)</li> <li>· 작업시 발생하는 폐·휴지 수거 소각 철저</li> <li>· 과업 완료 후 원지, 잉여분 반납 철저</li> <li>· 작업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li> </ul> </li> </ul> </li> </ul>	
용역수행 (감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li> <li>-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li> <li>-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li> <li>- 각종 회의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li> <li>-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 및 자료 보관관리 철저 여부점검</li> <li>- 하도급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li> <li>- 용역 관련 자료의 임의사용 또는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li> <li>- 보안각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 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li> </ul> </li> </ul>	
성과품 발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 준수</li> <li>○ 인쇄시 원지파지 잉여분 회수 소각</li> </ul>	
준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li> </ul>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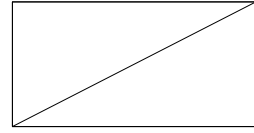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2] “제안서 표지”



# 과업제안서

용역명: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

업체명 : (인)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징계사항			



[서식 #4]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해당업체의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보유현황

[서식 #5]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예시) 0000.00.00.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서식 7】의 본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 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보안계약서

###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위 서약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